

# 대전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발표

- 일시 : 2023년 2월 27일 (월) 10시
- 장소 : 대전 경찰청 앞
- 진행순서
  - 경과보고
  - 조사결과발표
  - 질의응답
- 자료순서
  - 대전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사례 입장
  - 첨부자료. 1 업무추진비 집행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조사 결과
  - 첨부자료. 2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대전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내역 사례 기자회견

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 1712 기독교연합봉사회관 8층 , TEL.042-331-0092, FAX.042-252-6976 www.cham.or.kr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날 짜 / 2023년 2월 27일(월)

발 신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설재균 의정감시팀장, 010-3583-8786/042-331-0092)

제 목 / 대전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내역 사례 발표

## “대전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내역 사례 발표”

1. 공정보도를 위해 고생하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1995년도에 출범하여 대전 시민과 함께 지방권력을 감시하고 주민자치 확대를 위해 활동해왔습니다.
3.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내역을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청탁 금지법 등 위반 의심 내역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4.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차 기자회견(2023.2.27)에서 ‘청탁금지법’에서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한 집행 위반 의심 사례를 발표합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5. 2월 21일, 서구의회는 1)주류 판매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업종 2) 사용자 자택근처 기준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다음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입장입니다.
  - 1) 서구의회의 주장은 해당 식당이 서구청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제공한 상가 정보에 따르면, 해당 업소는 기타주점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국세청 빅데이터를 기준으로 상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훈령 적용 기준에 대해 점검과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구의회는 해당 내용에 대해 다시 점검하고, 조사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 2) 사용자 자택 근처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훈령위반이 아니라는 서구의회의 입장은 입법기관으로서 답변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의회 근처에 거주하는 의원의 특수성도 고려하여 해당 의원에 대해 500m 반경으로 조사범위를 한정하였음에도, 서구의회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자의적 기준으로 훈령을 적용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구의회는 지금까지 어떤 기준으로 집 근처를 규정해왔는지 먼저 언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서구의회는 해당 기준에 대한 언급 없이 훈령에 규정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는, 사실상

훈령을 무력화하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기준이 없다면 입법기관으로서 해당 내용에 대한 논의를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6. 3차 기자회견(2023.3.6)은 대전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현황 및 대안 제시 등의 기자회견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내용 :

- 경과 보고
- 조사결과 발표

- 일 시 : 2023년 2월 27일(월) 10:00 ~ 10:30

- 장 소 : 대전경찰청 앞

- 문 의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 설재균(010-3583-8786/042-331-0092)

**2023.2.27**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대전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내역 사례 발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광역시와 5개 자치구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2022년 7월 ~ 12월)을 점검 했다. 지난 1차 기자회견(2023.02.20)에 이어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중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사례 내용을 확인했다. 대전시의회 2건, 동구의회 8건, 중구의회 1건 총 11건이었다.

청탁금지법 1조 목적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공직자 등을 비롯해서 공정한 업무수행, 다른 부정한 외부요인에 대한 개입을 제도적으로 막은 것이다. 하지만 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집행해야 하는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사례를 발견했다.

청탁금지법 제2조1항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초·중·고등학교, 고등학교, 유아교육법 등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그리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12호에 따른 언론사 등이다. 이 중 ‘공직 유관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등은 대상이 광범위하며, 업무추진비 에서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고 불분명하여 이번 발표에서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집행 목적에 기재 되어 있는 ‘언론사 간담회’ 등을 확인했고, 해당 내역을 중심으로 1인당 3만원 이상 내역의 품의서, 지출결의서 등을 정보공개청구 했다.

청탁금지법에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17조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다. 해당 기준에서 음식물은 3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위 기준에 따라 대전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살펴봤다.

대전시의회 조원희 2부위원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중 2건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 해당 내역은 언론사 관계자와 식사 건으로 확인했고, 기존 공개된 업무추진비 내역 기준으로 1인당 3만원을 초과했다. 2023년 1월 18일 기준 공개된 업무추진비 내역을 2월 8일 정보공개청구하였다. 대전시의회는 해당 내역에 대해서 대상 인원 기재 오류라며 인원을 수정해 답변했다. 해당 내용이 정보공개청구에 맞춰 인원이 변경 된 것은 이해 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진행할 예정이다.

동구의회는 강정규 부의장 5건, 박철용 운영위원장 3건을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 해당 내역 정보공개청구 결과로 언론사 관계자와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했으며, 이는 1인당 3만원을 초과했다.

중구의회 윤양수 의장은 1건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사례 내역을 확인했다. 2022년 10월 4일 기준으로 확인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사용장소 베스타, 사용 인원 17명, 결제금액 129,000원을 집행한 내역이다. 10월 26일 중구의회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고, 인원 기재 오류로 17명에서 6명으로 수정했다고 답했다.

2022년 10월 중구의회 확인 결과, 베스타는 대전 소재 뷔페였으며 평일 중식 가격은 43,000원이다. 중구의회에서 이야기한 6명이 정확한 인원이라면, 결제 금액은 258,000원이어야 한다. 인원과 결제 금액이 전혀 맞지 않다. 1인당 금액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3만원이 넘을뿐더러, 훈령 기준인 4만원에도 맞지 않다. 중구의회는 해당 내역에 대해서 소명이 필요하다.

각 지방의회가 집행 목적을 부실하게 기재하고 집행 대상은 공개 기준에도 없어, 조사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집행 목적과 대상은 업무추진비 공개에 있어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부실하게 관리되거나 공개조차 되지 않아 투명한 공개와는 거리가 멀다. 업무추진비 내역 조사 과정에서도 정보공개청구, 유선, 방문 등으로 해당 내역을 점검 할 때마다 각 지방의회는 인원을 수정하거나, 시간을 수정하는 등 계속해서 내역을 변경했다. 이는 공문서로 관리되는 업무추진비 내역의 신뢰도를 상당히 떨어뜨리고, 정보공개시스템 자체도 부정할 수밖에 없는 행위임을 지방의회는 인지해야 한다. 대전 지방의회는 이같은 행위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지난 2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업무추진비 훈령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해 각 지방의회에 점검을 요청했고 2월 28일까지 회신을 요구했다. 대전 지방의회가 업무추진비 방만 운영에 대한 무게감을 인지하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진지하게 답변할 것을 기대한다.

그리고 대전시의회와 중구의회를 대상으로 대전경찰청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사례 수사의뢰 및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사례를 고발 할 것이다. 이번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사례 발표를 계기로 대전 공직자들의 투명하고 정직한 업무추진비 사용 문화가 정착되길 바라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다.

첨부자료. 1

- 대전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을 통한 조사 결과 -

## 1. 조사 개요

- (방 향)

- 업무추진비 사용자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사례 검토

- (대 상)

-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자(의장, 위원장)

- (범 위)

-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 (방 법)

- 대전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내역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사례 확인
  - 대전광역시의회 및 5개 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 확보
  - 청탁금지법 대상 및 금액 제한 내용 등 확인
  - 1인당 3만원 초과 내역 확인

## 2. 조사 결과

### 1)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개요

-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음
- 다만,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을 따른다고 명시

### 2) 청탁금지법 개요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임
-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규정은 제 2조1항에서 규정하고 있음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행정기관 등 및 지방자치단체
  -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 초·중·고등학교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12호에 따른 언론사
    -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의 대표자와 임직원
- 청탁금지법 제8조3항2호에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같은 법 시행령 17조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음
    - 음식물 : 3만원
    - 경조사비 : 조의금 5만원(화환·조화는 10만원)

### 3) 대전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내역 사유

- 청탁금지법 공공기관 등의 대상에 언론사(대표 및 임직원)이 포함되어 있음
- 금품 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 등 수수가 금지되는 것이 맞음.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에 부합 할 경우 3만원 이내 음식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음
- 해당 경우 기준으로 할 경우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3만원 이내 음식물을 제공 할 수 있다고 해석 가능

- 해당 내용을 기준으로 3만원 초과 된 내역을 확인하였고, 언론사 기준으로 3만원 초과 내역을 확인함

**4) 대전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내역**

- 1인당 3만원 이상 내역은 각 의회에 품의서 및 전표 등을 정보공개청구 함

**(1) 대전시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 중 의심 사례 표(대전시의회 수정 전 일부 집행 내역)**

연번	사용자	집행일자	시간	사용장소	집행목적	대상인원	카드액(원)
1	대전시의회 2부의장	2022-11-10	12:58	미향	의정홍보 언론 간담회	4	125,000
2	대전시의회 2부의장	2022-11-28	12:55	미향	의정홍보 언론 간담회	3	100,000

- 조원휘 대전시의회 2부의장
- 조원휘 대전시의회 2부의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 2건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사례를 발견함
- 기존 공개 되어 있던 내역은 1인당 3만원이 초과되었음
  - 해당 내역의 품의서 및 지출결의서 등 정보공개청구를 진행 하였음.
  - 대전시의회는 해당 내역의 대상인원 기재가 오류였다며 각각의 대상인원을 6명, 4명으로 수정하였음
- 이 외의 다른 내역의 인원을 수정 하는 등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의 신뢰도 하락이 주 원인
- 해당 내역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사례 및 다른 집행내역에도 현행법 위반 의심 사항이 있는지 수사 의뢰 요청

**(2) 동구의회**

- 대전동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 중 의심 사례 표

연번	사용자	집행일자	시간	사용장소	집행목적	대상인원	카드액(원)
1	동구의회 부의장	2022-07-22	19:38	해와솔식당	동구의회 의정홍보 및 구민 소통방안 의견 교환	6	190,000
2	동구의회	2022-09-01	12:48	서린식당	민선8기 역점사업 추진에 따른 의정활동	4	130,000

	부의장				홍보방안 의견 교환		
3	동구의회 부의장	2022-10-25	20:43	원어참치	동구의회 효율적인 의정활동 홍보 방안 논의	6	210,000
4	동구의회 부의장	2022-11-18	20:46	원어참치	천동중학교 설립 추진 관련 의정활동 방안 논의	4	160,000
5	동구의회 부의장	2022-11-25	21:04	선사부짬뽕중화요 리	행정사무감사 주민제보 운영에 따른 의정활동 홍보 방안 논의	6	200,000
6	동구의회 운영위원장	2022-08-17	20:11	다이아몬드횃집	주요정책사업 추진에 따른 의정활동 홍보방안 논의	5	163,000
7	동구의회 운영위원장	2022-09-16	20:37	한마음정육식당 용운점	동구의회 의정운영 및 의정활동 홍보방안 논의	5	157,000
8	동구의회 운영위원장	2022-11-08	19:31	위대한조개전골	민선8기 역점사업 추진 관련 의정활동 홍보방안 논의	6	240,000

- 강정규 동구의회 부의장, 박철용 동구의회 운영위원장
  - 강정규 동구의회 부의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중 5건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를 확인하였음
  - 박철용 동구의회 운영위원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중 3건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를 확인하였음
  - 해당 내역의 품의서 및 지출결의서 등 정보공개청구를 진행 하였고, 언론사 관계자와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함
  -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내역 사항으로 고발 진행
  - 해당 내역을 비롯해 다른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도 현행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 요청함

### (3) 중구의회

- 대전중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 중 의심 사례 표(중구의회 수정 전)

연번	사용자	집행일자	시간	사용장소	집행목적	대상인원	카드액(원)
1	중구의회 의장	2022-08-31	12:51	베스타	의정홍보 협조를 위한	17	129,000

					언론관계자와의 간담회		
--	--	--	--	--	-------------	--	--

- 윤양수 중구의회 의장
-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공개는 사용장소 베스타, 대상인원 17명, 카드액 129,000원으로 공개 함.
- 해당 내역 정보공개청구 진행 하였고, 중구의회는 대상인원을 6명으로 변경, 사용장소와 결제 금액은 동일
-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언론사 관계자와 식사 확인하였고, 베스타는 대전 소재 뷔페로 중구 의회에 확인 하였음(2022년 10월)
- 해당 뷔페 평일 중식 가격은 43,000원임
  - 대상인원을 6명으로 축소해도 결제 금액은 258,000원임
    - 공개된 결제금액 129,000원은 계산에 맞지 않음
- 청탁금지법 제한 금액인 3만원 초과
- 1인당 금액이 4만원 초과로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뿐만 아니라 훈령 위반 의심 내역임
- 해당 내역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사례 및 다른 집행내역에도 현행법 위반 의심 사항이 있는지 수사 의뢰를 요청

## 4. 업무추진비(203목)

### 각 업무추진비 공통사항

-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한다.
- 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격려금, 축의·부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 현금지출 중 격려금을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격려금 지급 목적과 대상, 금액(기 지급, 금회지급) 및 지급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출품의서(기본계획 수립·방침 포함)를 작성하여야 한다.
  - 개산급으로 전달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경우 전달자와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모두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수요자가 1인이거나 전달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최종수요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달자의 영수증을 징구하지 아니한다.
  - 최종수요자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 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전달자 등이 명시된 집행내역서를 현금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 (1)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 (2) 관련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관련 근무지란 시·도의 경우, 해당 시·도, 시·군·구의 경우, 해당 시·군·구와 그 경계를 접한 인접 시·군·구를 말함)
  - (3) 비정상시간대(23시~다음날 6시)
  - (4) 사용자의 자택근처
  - (5) 주류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 사용
    - 증빙자료 작성 시에는 일시, 장소, 목적, 집행대상,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사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고,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을 따른다.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은 10만원까지 가능
-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써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를 단체장위주로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
- 다음의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수 없다.
  - 개인명의로 불우이웃돕기 성금
  -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개인별로 거두어서 내는 성금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21조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